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60
----------	-----

제출연월일 : 2007.10.29.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대전지방경찰청의 개청에 따라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중 “충남지방경찰청장”을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 조정함(안 제3조제2항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해당없음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중 “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대전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시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중 “시”를 각각 “대전광역시”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제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각 호외의 부분중 “시장”을 “대전광역시시장”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중 “재난업무담당과장”을 “민방위방재과장”으로, “담당사무관”을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u>대전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u>----- ----- -----</p>
<p>제2조(기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p><삭제></p>
<p>제3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u>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이 된다.</p> <p>②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u>시</u>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과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p>	<p>제3조(구성 등) ①<u>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u>대전광역시장</u>----- -----</p> <p>②----- ----- ----- <u>대전광역시</u> ----- ----- -----</p>

현행	개정안
<p>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p> <p>1. ~ 2. (생략)</p> <p>3. <u>충남지방경찰청장</u></p> <p>4. (생략)</p> <p>5. <u>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u></p> <p>6. <u>시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u></p> <p>③ (생략)</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u></p> <p>4. (현행과 같음)</p> <p>5. <u>대전광역시</u>-----</p> <p>-----</p> <p>-----</p> <p>6. <u>대전광역시</u>-----</p> <p>-----</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u>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u>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p>제5조(위원의 해촉) <u>시장은 위촉직 위원</u>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제5조(위원의 해촉) <u>대전광역시시장</u> -----</p> <p>---<u>각 호의 어느 하나</u>-----</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8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u>재난업무담당과장</u>이 되고, 서기는 <u>담당사무관</u>이 된다.</p>	<p>제8조(간사) -----</p> <p>-----</p> <p>-----<u>민방위방재과장</u>-----</p> <p>-----<u>위원회업무 담당사무관</u>-----</p>

관련법규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지역위원회) ①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지역별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시·도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속하에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6>

②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부의되는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 (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07.1.26>

1.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 2007.7.2 행정자치부령 제386호]

제21조 (관할구역 등) ①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있는 하천·도로·교량·터널 기타 중요공작물에 대한 지방경찰청간의 관할은 경찰청장이, 경찰서간의 관할은 지방경찰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별표 1] <개정 2007.7.2>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제21조제1항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일원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일원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일원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일원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일원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일원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일원
경기도지방경찰청	경기도	경기도 일원
강원도지방경찰청	강원도	강원도 일원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충청북도	충청북도 일원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일원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전라북도	전라북도 일원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일원
경상북도지방경찰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일원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상남도	경상남도 일원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